

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편집규정

제정 2012. 3. 23.

개정 2012. 7. 12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조세연구소설치및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가 발간하는 학술지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(영문 명칭은 「Tax and accounting review」 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게재 논문의 제출·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논문의 주제)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에 게기하는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한다.

1. 조세법
2. 조세정책 및 행정
3. 국제조세 및 지방세
4. 회계학(세무회계 포함)
5. 세무사 제도
6.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있는 분야

제3조(발간)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는 각각 6월 말(전기)과 12월 말(후기)까지 매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편집위원회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하고자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연구소의 소장은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며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위원 15명 이내

제5조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권한)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
1.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
2.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
3.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의 편집
4. 그 밖의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장(운영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재석으로 개회하고, 재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논문게재 신청

제8조(신청대상 논문)

- ①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.
- ②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이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9조(논문의 제출) ①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4월 30일과 10월 31일까지 전자문서(전자파일)로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이메일 혹은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논문의 작성방법)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하고자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[별지 1]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장 논문 심사

제11조(심사대상 논문) 심사대상 논문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신청한 논문으로 하며,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논문이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논문심사의 의뢰)** ① 편집위원장은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에 대하여 연구소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문의 심사를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이외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- ③ 심사를 의뢰할 때는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저자명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.
- ④ 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며, 세부적인 지급금액과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
- 제13조(심사위원)**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1.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(등재후보포함)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
 2.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
 3.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
-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충실도, 기각률(논문심사건수 중 제18조에 따른 “게재 불가” 건수의 비율)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심사의 기준)**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.
1. 논문 내용과 제2조에서 정하는 주제의 정합성(正合性)
 2. 논문전개의 논리성
 3. 논문의 독창성
 4.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
 5.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

- 제15조(심사결과의 판정)**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그 내용을 [서식 1]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논문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를 받은 때로부터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 기간까지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인비(人秘)로 통보한다.

1. 수정이 필요 없을 때 : ‘게재 적합’. 자구수정 등 형식상 또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이 수정사실을 확인하도록 한 경우에도 포함한다.

2.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: ‘수정후 게재가능’. 게재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추었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,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.
3. 게재가 부적합할 때 : ‘게재 부적합’.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 연구의 단순반복 등으로 게재가 부적합한 경우를 포함한다.

제16조(심사결과의 통보)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[서식 2]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논문종합심사 보고서에 따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.

- ②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 만약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와 통보할 시기를 알려주어야 한다.
- ③ 제15조제2호에 따라 ‘수정 후 게재가능’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논문의 수정·보완을 요구하고 게재신청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(파일)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게재신청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논문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제17조(재심) 게재신청자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최초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. 이 경우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“게재 적합”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18조(최종결정)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② 심사위원 간에 심사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며, 심사의 공정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제5장 편집 및 배부

제19조(논문게재) 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한다.

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한다.

제20조(논문사실의 명시) ①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는 편집위원, 심사위원 및 한국조세연구소 운영 및 연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.

제21조(연구부정행위) ①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논문을 게재하는 자와 심사위원이 「한국조세연구소 윤리규정」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.

②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22조(논문에 대한 권리) ①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한 논문의 출판권은 한국조세연구소가 갖는다.

② 게재신청자는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신청을 함으로써 신청한 논문에 대한 복사권·공중전송권·배포권을 한국조세연구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

제23조(배부) ①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을 발행할 때마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.

②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을 외부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23조(세칙)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의 게재신청,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2012. 3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7. 1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1]

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논문심사 보고서

제 목					
제 재 예정사항	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제 집 제 호 심사구분 초심 () / 재심 ()				
세부 심사결과	평가항목 평점	A	B	C	* C 등급이 3 항목 이상이면 제재 불가
	논문의 체계와 논리성				
	이론적 근거의 충실도				
	논문 내용의 독창성				
	논문의 학문적 기여도				
	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				
	원고작성요령의 준수				
최종판정	제재 적합	수정 후 제재 가능		제재 부적합	
심사의견	◆ 수정사항 - 논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() - 내용 중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 보완할 것 () - 최신의 판례와 현재결정 등을 반영할 것 () - 외국문헌 등의 불명확한 인용부분을 보완할 것 () - 원고작성지침에 맞게 수정 작성할 것 () - 기타 ()				
	◆ 제재불가사유 -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논문임 () -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성격의 논문임 () -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임 () - 그 밖의 사유 ()				

심사위원 소속 및 직위 _____

연 락 처 _____

성 명 _____ (인)

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편집위원회 위원장 규하

[서식 2]

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논문종합심사 보고서

구 분	총제출논문수	제재 적합	수정 후 제재적합	제재 부적합	비 고
편 수					

구 분	논문저자	논 문 제 목	심사위원	비고
게재 확정				
수정 후 게재				
게재 불가				

붙임 :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논문심사보고서 부.

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게재 논문심사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편집위원회 위원장 (인)

한국조세연구소장 귀하

「세무와 회계 연구」 논문작성요령

1. 원고작성 일반

- 1) 「세무와 회계 연구」에 게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『한글』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게재신청 논문은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해야 한다. 표지에는 국문 및 외국어로 논문제목, 저자명을 표기하고, 국문으로 근무처, 직위, E-mail, 연락전화번호,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, 원고매수를 표기한다. 저자가 공동연구인 경우 주 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.
- 3) 원고는 논문표지, 논문제목(괄호 안에 외국어 표기), 국문요약문, 외국어요약문, 주제어표시, 본문, 게재중복신청확인 표시, 참고문헌, 부록(설문지 등)의 순서로 작성한다. 다만,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.
- 4)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, 주저자 ·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하며,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2. 목차의 순서

- I . 로마숫자 (중앙으로, 진하게)
 1. 아라비아 숫자 (2칸 들여쓰기, 진하게)
 - 가. 한글 (4칸 들여쓰기, 진하게)
 - (1) 괄호 숫자(6칸 들여쓰기, 진하게)
 - (가) 괄호 한글 (8칸 들여쓰기)
 - 1) 반괄호 숫자 (9칸 들여쓰기)
 - 가) 반괄호 한글 (10칸 들여쓰기)

3. 본문의 작성

- 1) 편집용지의 여백주기 (단축키 사용 : F7) 설정
위쪽 : 40, 아래쪽 : 35, 왼쪽 : 35, 오른쪽 : 35,
머리말 : 12, 꼬리말 : 12, 제본 : 0
- 2) 문단모양
왼쪽 : 0, 오른쪽 : 0, 들여쓰기 : 0, 줄간격 : 180, 문단위 : 0,
문단아래 : 0, 날말간격 : 0, 정렬방식 : 혼합
- 3) 글자모양
서체 : 바탕, 자간 : 0, 장평 : 100, 크기 : 10

4. 논문요약문

논문의 요약문은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한다. 요약문에는 연구주제, 연구방법, 연구결과,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한다.

- 1) 국문요약문 : 700자 이내로 하며 <요약>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.
- 2) 외국어요약문 : 국문요약문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<Abstract>라고 굵은 글자체로 작성한다.

5. 주제어

주제어(Key words)는 3내지 5단어 이내로 각각 국문 및 외국어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.

6. 각주의 표기

1) 문단모양

왼쪽 : 0, 오른쪽 : 0, 들여쓰기 : 0, 줄간격 : 130, 문단위 : 0,
문단아래 : 0, 낱말간격 : 0, 정렬방식 : 혼합

2) 글자모양

서체 : 바탕, 자간 : -5, 장평 : 95, 크기 : 9

3) 저서 인용

저자명, 서명, 출판사, 출판연도, 면수.

4) 정기간행물 인용

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잡지명, 제*권 제*호(연도), 면수.

5) 기념논문집 인용

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***기념논문 「기념논문집명」(연도), 면수.

6) 판결 인용

대법원 ****.*.*.* 선고, **다****판결.

또는 대판 ****.*.*.*,**다****.

7. 게재증명신청

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띠워 “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.”이라고 표기한다.

8. 참고문현

(1) 단행본의 경우

- ① 동양서 : 저자, 「책명」, 출판지 : 출판사, 출판연도

② 서양서 : 저자, 책명(이탤릭체), 출판지 : 출판사, 출판연도

※ -저자명은 성, 이름순으로 기재하며, 성 다음에 콤마를 찍는다.

(2) 논문의 경우

① 동양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「간행물의 명칭」, 제*권 제*호(발행연월)

② 서양논문 : 필자, 논문명, 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, 권수, 호수, 발행연월